

#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_독립성

김 유 경 상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youkyoungkim@kr.kpmg.com

## 1.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의 의미

감사위원 및 감사는 감사업무를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회사 또는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나 연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감사위원 및 감사의 자격요건 중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크게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으로 구분된다.

표 1 |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

정신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여야 함을 말함</li> <li>정신적 독립성은 감사위원 또는 감사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양심과 도덕에 근거한 자기 관리 및 통제가 요구됨</li> <li>외관상 독립성이 갖추어졌더라도 정신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감사기구가 진정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li> </ul>
외관상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위원 및 감사는 회사, 지배주주, 임직원 등으로부터 경제적·신분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li> <li>즉, 감독 대상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관계도 없어야 함</li> <li>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수행하거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더라도 신분 및 보수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함</li> </ul>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sup>1)</sup>.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 관련 국내외 규정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될 수 ‘없는’ 요건이 바로 결격사유인데,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나 혈연관계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는 최소한의 독립성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그 외 사외이사 비중 증대 및 권한 강화, 감사위원 선임절차 개선, 감사기구 직속 내부감사보조조직 설치와 같은 노력들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 관련 국내외 규정

1) 규정 조항은 본고 내 별첨 참고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법률로서 결격사유를 정해 이해관계·연고 있는 인사 사전 차단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은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통해 규율되고 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같이 최소한의 전문성·윤리성과 관련된 결격사유도 있지만, 최대주주 본인 및 그 친인척 또는 해당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고용·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및 감사가 될 수 없다는 독립성 관련 결격사유가 주를 이룬다.

먼저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상법 상 독립성과 관련된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1 | 상법 상 독립성 관련 사외이사 결격사유

회사 (상장·비상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li> <l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li> <li>•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ul>
상장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결격사유 포함</li> <li>•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li> <li>•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었던 자 등</li> </ul>

한편, 상법은 감사에 대해서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겸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현재뿐 아니라 최근 2년 간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와 고용관계가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로서 감사(위원)의 독립성 관련 결격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고용·거래와 같은 법적인 계약관계 및 혈연관계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엄격한 편이나, 학연·지연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유대관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근무했던 자라도 퇴직 후 2년만 지나면 해당 회사의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 2)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 확대 및 권한 강화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모두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위원회 대표가 사외이사라고 해도 이것이 표면적·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즉 사외이사의 권한 및 독립성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배주주나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라도 경영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사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을 때 재선임이나 보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의 권한 및 실질적 독립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 3)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영향을 제한하는 선임절차 및 임기제한

만일 보유한 지분율에 단순 비례하게 감사(위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지배주주 또는 그 일가가 자신을 감독할 사람을 자신이 선출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상법 및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감사 선임 시 단순 3% 규칙<sup>2)</sup>, 엄격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규칙<sup>3)</sup>,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단순 3% 규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3% 의결권 제한 규칙은 현행과 같이 이사가 먼저 선출되고 그 중 감사위원이 선임되는 방식 하에서는 사실상 감사위원에 대해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배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 찬성 의견을 행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한 분리선출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법 개정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이밖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가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최대 재임 가능기간은 5년, 각 위원회 당 활동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에 상한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정해진 임기는 반드시 보장하여 소신 있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임 횟수 또는 최대 재임 가능기간에는 상한을 두어, 장기재직으로 인한 유착 형성을 방지

2)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각 개인 주주는 3%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칙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 등이 보유하는 의결권의 합계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칙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기타 운영 측면 독립성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대표이사 직속이 아닌 감사기구 직속의 내부감사보조조직이 있어야 한다.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모범규준은 이 보조조직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내부감사보조조직이 기업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대표이사 직속인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대표이사를 감독의 사각지대에 두게 할 수 있다. 덧붙여, 내부감사보조조직 직원들의 인사권을 감사(위원)이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한편,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독자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 및 감사의 독립성 관련 현황

경제개혁연대(ERRI)의 2016년 6월 보고서<sup>4)</sup>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0대 민간기업집단의 감사위원은 교수 출신이 31%, 관료 출신이 25%인 반면 감사는 재계 출신이 무려 75%에 달했다. 문제는, 재계 출신 감사의 절반 이상이 계열회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자사 퇴직 임원이 감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상법 상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최근 2년 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은 감사가 될 수 없는데, 이는 달리 해석하면 2년이 지나면 계열회사 및 자사 출신 임직원이 감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에서도 감사의 자격요건 중 겸직금지 뿐 아니라 자사 및 계열회사 근무 경력요건을 강화해, 취업제한을 2년이 아닌 5년과 같이 장기로 바꾸거나 아예 자사 또는 계열회사 출신은 감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외이사 제도에 관해 다룬 보고서<sup>5)</sup>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비금융회사의 2010~2012년 사업연도 사외이사 활동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가 단 한 명이라도 안건에 반대·보류·수정요구·조건부 찬성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9,101개 안건 중 33건(0.4%)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의 역할이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동 보고서는 또한 CEO와 지연·학연 등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다는 통계치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1년 간 안건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에 비해 약 2배의 확률로 다음 해에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공식적 유대관계까지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맹점을 이용해 CEO와 친밀한 관계인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가 소신 있는 이사회 활동을 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4) 경제개혁연대, “30대 민간기업집단 감사 및 감사위원회 분석(2016) - 181개 회사의 감사제도 운영 현황과 감사 및 감사위원 447명의 경력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6-5호, 2016.06.02.

5) 한국개발연구원,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KDI Focus 제56호, 2015.05.27.

한편, 대신경제연구소의 올해 5월 보고서에 따르면<sup>6)</sup>,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재직 감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동 보고서는 장기간 재직하는 감사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4. 결론

감사위원 및 감사가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것이고,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를 감독 및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고려할 때 감사기구가 사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감사기구가 감독 및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 여러 법규에서 독립성이 결여되었거나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 감사(위원) 결격사유로써 상세히 규제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내 기업들의 감사기구 독립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결격사유는 가까스로 피했으나 CEO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가 하면, 현실적 권력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사외이사가 안전에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내비친 경우 차기 재선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도 했다. 또한 법률에서 해당 회사 및 그 계열회사 출신인 자에 대해 ‘2년’ 동안만 감사 및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 자사 또는 계열사 퇴직 후 2년이 지난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국내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감사기구에 대해 자신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주체로서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사내 권력 간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감사(위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덧붙여, 자사 및 계열회사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 철폐, 결격사유에 학연 및 지연 관련 내용 추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비상장사에까지 확대하는 등 법적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권고하는 바이다. 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장기재직이 독립성 훼손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잦은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교체는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대신경제연구소, “한계기업의 지배구조 특징과 감사의 업무충실도”, Governance Issue Report, 2016.05.11.

## [별첨] 감사기구 독립성 관련 국내 법규

표 2 | 결격사유 관련 규정

<p><b>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b>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li> <li>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li> <li>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ol>
<p><b>상법 제411조(겸임금지)</b>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p>
<p><b>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b>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li> <li>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li> <li>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b>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b>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li> <li>나. 6촌 이내의 혈족</li> <li>다. 4촌 이내의 인척</li> <li>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li> <li>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li> </ul> </li> <li>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사·집행임원·감사</li> <li>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li> <li>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li> </ul> </li> </ol>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b>상법 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②</b>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li> <li>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li> </ol>
<p><b>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③</b>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b>자본시장법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구성) ⑤</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li> <li>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li> <li>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li> <li>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li> <li>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li> <li>6.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li> <li>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li> <li>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b>자본시장법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③</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li> <li>2.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li> <li>3. 그 밖에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b>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감사위원회) ③</b>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li> <li>2. 상근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li> <li>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li> </ol>
<p><b>자본시장법 제27조(상근감사) ②</b>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li> <li>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li> <li>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li> <li>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li> <li>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li> <li>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li> </ol>



<p>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b>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p>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아직 제정되지 않음

### 표 3 | 사외이사 구성 및 권한 관련 규정

<p><b>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b>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p><b>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b>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li> <li>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li> </ol>
<p><b>자본시장법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b>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li> <li>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li> <li>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li> </ol>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b> ②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b>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p>

### 표 4 | 선임절차 관련 규정

<p><b>상법 제409조(선임)</b>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b>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p> <p>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b>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b>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p>

<p>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b>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p> <p>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p> <p>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b>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 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p> <p>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p> <p>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표 5 | 임기 관련 규정

<p><b>상법 제383조(원수, 임기)</b>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p> <p>(중략)</p> <p>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p>
<p><b>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9조(사외이사의 임기)</b> ①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p> <p>② 사외이사의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의 만료시점을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함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 중 5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재임함에 따라 재임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p> <p>⑥ 제4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p>
<p><b>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3조(이사회내 위원의 연임 제한)</b> 사외이사는 보상위원회 및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p>

표 6 | 의결 권한 관련 규정

<p><b>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b>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b>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b>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p>
--

표 7 | 내부감사보조조직 관련 규정

<p><b>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b>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b>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8조(감사보조조직)</b> ① 감사위원회에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p> <p>②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p> <p>③ 금융회사는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으로 감사보조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p>
--